

(붙임 2)

「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6조(특별지원부문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<u>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</u>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 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 정한다.</p> <p>③~⑦ (생 략)</p>	<p>제6조(특별지원부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<u>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 일까지</u>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 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~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지원기간 연장</p>
<p>< 신 설 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<2021. 8. .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<u>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<u>중전 기준을 적용한다.</u></p>	<p>- 부칙 신설</p> <p>- 시행일 명시</p> <p>- 경과조치 마련</p>